

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(제4조제2항 관련)

평 가 인 자 (항 목)	평 점		
	-3	0	+3
수 질 등 급 취 수 량	상수원수 I 급 1일 3천 톤 미만	상수원수 II 급 1일 3천 톤 이상 1만 톤 미만	상수원수 III 급 1일 1만 톤 이상
취 수 비 율 (호소수의 경우)	01 미만 (0.01 미만)	0.1 이상 0.5 미만 (0.01 이상 0.02 미만)	0.5 이상 (0.02 이상)
개 발 잠 재 력	없 음	보 통	있 음

비 고

1. 수질등급의 판정: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항목 중에서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, 호소수의 경우는 화학적산소요구량, 총인 및 총질소를 기준으로 판정한다.
2. 취수비율: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, 호소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유효저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.
3. 개발잠재력은 상수원의 지리적 위치, 경관, 토지이용전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.
4. 위 표에서 평가점수의 합계를 항목수로 나눈 값과 표준거리를 합산한 값을 보호구역의 지정거리로 한다.